

# 2020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0년 4월 8일(수요일) 11:00 ~ 12:30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임시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최백렬, 윤영상, 박성수, 홍철운, 이동현, 양규혁, 이인재, 김중기, 송완상, 이문선, 이원석, 이민규

○ 불참자 : 유희철, 조재영, 고관호 위원

○ 상정안건

- 2020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간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김강욱)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0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2020학년도 교  
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임시 위원장을 정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교학부총장님께서 임시위원장을 수행해주셨습니다.

위원 : 최백렬 교무처장님을 임시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양규혁)

간사 : 교무처장님 추천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만약에 다른 의  
(김강욱) 견이 없으시다면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교무처장님이신 최백렬 위원님이 오  
늘 재정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전원) 동의합니다.

간사 :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최백렬 교무처장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  
(김강욱) 고 임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제 자리가 아니라서 앉아있기 조금 불편하지만 임시위원  
(최백렬) 장직을 잠깐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안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건 인대요. 제가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안만 제  
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몇 분 새롭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송완상 위원님 대신에 공직협회장이셨던  
김용우 위원님이고요, 이민규 위원님 전에는 전 동창회장이 추천해주셨던  
이홍래 위원님이고요, 두 분이 바뀌어서 송완상 위원님하고 이민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 원 :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

(송완상)

임시위원장 : 네 고맙습니다.

(최백렬)

위 원 :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

(이민규)

임시위원장 : 이민규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우리 대학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최백렬) 바쁘시고 오늘도 재정위원회에서 대학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 구성은 15분 인대요 유희철, 조재영, 고관호 위원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15분 중에 12분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에 의거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직 위원 중에서 호선함에 일반직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직위원은 본부에서 일하고 계신 처국장님들이고, 제 죄족에 계신 분들이 일반직위원님들입니다. 본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일반직 위원 중에서 차기위원장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질문이 있는대요. 연임여부는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인재)

간 사 : 책자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관련 법령 및 규정 모음을 보시면요. 여기서  
(김강욱) 재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보시면 됩니다.

위 원 : 일반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라고만 되어있지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는 걸로  
(윤영상) 보이네요. 그러면 저는 2019회계연도 재정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전임 위원장님 양규혁 위원님을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 네 상과대학 회계학과 양규혁 교수님이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  
(최백렬) 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 원 : 양규혁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수고를 해주셨는데 한분을 위원장으로 추천  
(김중기) 해서 결정되기보다는 투표를 거쳐서 위원장이 선출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연과학대학 이인재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 네 자연대 이인재 교수님이 추천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추천이 되어서  
(최백렬) 투표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양규혁 위원님과 이인재 위원님 있었습니다. 투표용지에 원하시는 후보자 성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갑작스럽게 추천을 받아서 당황스럽습니다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서는 이 (이인재) 해는 합니다만은, 저는 지난번에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추천해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은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만은 굳이 투표하는 번거러움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가능하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퇴하고 싶습니다.

임시위원장 : 김중기 위원님 받아들이십니까?

(최백렬)

위 원 :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중기)

임시위원장 : 투표를 해도 좋을 것 같지만 이인재 위원님께서 사퇴를 하셔서 양규혁 위원님이 (최백렬) 재 추천된 걸로 하겠습니다. 이인재 위원님이 추천이 되었지만 본인께서 고사하셔서 단일 후보로 추천된 걸로 알겠습니다. 선출이 한분만 되었기 때문에 차기 위원장으로 양규혁 위원장님의 선출 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 역할은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을 위원장님으로 추천되신 양 규혁 위원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간 사 : 참고사항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집 23page에 보시 (김강욱) 면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2020회계연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방금 선출된 양규 (양규혁) 혁입니다. 사실 세계적인 위기상태를 맞이해서 우리 대학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화를 6/17(수) 이번 학기에 12시간을 하는데 계속 나와서 녹화하고 이런 일들이 일상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재정 위원회도 변화를 반영해서 할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한 달만 더 인내하고 지내면 이 위기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럼 바로 안건 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중에서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 (이상노) 안」에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이상노 기획예산부처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양규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 원 : 교연비에 대한 법은 교육부령 시행규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인재) 불합리한 법이고 시행자체에 문제가 큽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에서는 없는 국립대학 교수들만 받는 규칙인데요. 방금 부처장님께서도 말씀 해주셨다시피 이것이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놓고 급여라고 간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급여라고 간주를 안 하면서도 세금은 급여 성으로 내고 있죠. 그리고 이게 급여가 아님으로써 연금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위 원 : 그래서 공적으로 여기에서 손해 보는 금액은 실로 상당합니다. 같은 나이에 공무 (이인재) 원으로 쳤을 때 공무원의 보수보다도 훨씬 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국교원에서 연구가 되어 있고요. 이 사실을 각 대학의 총장님과 교육부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법 자체가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는 교수회 입장에서 급여성 보조경비로 지급하지 아니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받는 모든 제한, 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수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나눠서 그니까 2천만원 미만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것인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교수회와 많은 교수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만은 아주 복잡한 규제나 규정을 두어서 이것을 재제하는 것 그리고 일부 교수님에 대해서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구 및 산학협력활동 전 항목 의무 미이행 교원은 연구 전 영역에 참여를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제한을 확대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부처장: 네 맞습니다. 전에 제한이 확대되었습니다.

∨ ∙ ∙

(이상노)

위 원 :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확대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인재)

기획예산부처장: 감사에서 경상도 대학을 감사를 했는데 이행 부분이 전혀 몇 퍼센트로 이행이

(이상노) 안 됬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시켜서 제안을 하게 되어서 교육부의 감사조치로 내놨습니다.

위원장 : 실제로 이 교연비를 못받는 교수들이 대학에 있나요?

(양규혁)

기획예산부처장: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한 12분정도 계십니다.

(이상노)

위원장 :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에 기성회비가 있을때

(양규혁) 는 기성회비에서 국가에서 주는 보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주는 보수성경비이었는데 대학회계로 통합되면서 받던 보수성이 이상한 위치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수들은 전에부터 받던 보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교육부에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을 제출해라라고 하여서 어정쩡한 위치가 됐는데 사실 요즘에 교수 채용 평균 연령이 4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처음 직장을 시작해서 보수를 받기 시작하는 교수들한테 보수체계가 공무원시스템에서 설계가 잘못되어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보전하는 보수인데 그것을 못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은 다 끝나셨나요?

위 원 : 학술트랙에 연구보고서 인문·사회는 50페이지 이상, 이공·예체능계열은 30페이지 (이동현) 이상이 기준보다 강화된 것입니까?

행정주사보: 전년도랑 동일합니다. 인문·사회계열은 20페이지, 그 외 계열은 15페이지는 일반 (정유진) 트랙에서 연구 및 산학협력활동영역의 연구결과보고서가 20페이지 및 15페이지입니다.

위 원 : 학술트랙이면 연구결과를 내는것인데 거기에 따로 보고서를 냅니까?  
(이인재)

기획예산부처장: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있지만 못채우는 사람을 위하여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상노) 하고 있습니다.

위 원 : 논문을 안냈을 때 보고서로 대체가능하다는 이야기 인가요?  
(최백렬)

기획예산부처장: 예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기는 대요. 예를 들면 퇴임을 이번년도에 하신다든 (이상노) 지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데 1년 사이에 끝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논문이라는 것이 게재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 그런 조항을 두는 것이 좋겠 (양규혁) 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원 : 아까 질문이 맞추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미이행 교원은 연구 전 영역 참여를 (이인재)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결과보고서를 못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못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 외의 금액을 못받는 것 외에도 다음연도에 계획서를 낼 수 없다 즉 다음연도에 교연비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부처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산학협력영역에서만 비용 미지급했는데요. 이번에는 교연 (이상노) 비 전체영역 교육·연구·학생지도까지 계획서를 아예 못 내게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급도 못 받습니다.

위 원 : 일반트랙인 경우에는 교육·연구·학생지도 이렇게 있잖아요? 세 가지 분류로 나뉘 (이인재) 는데 한 부분의 잘못 그러니까 이미 결과보고서를 안냄으로써 거의 절반가량을 못 받게 되는데 이미 받은 불이익이외에도 너무 심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요? 벌칙이 너무 과도한거 아닌가에 대한 말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다음연도에 해당되는 교연비까지도 못 받게 되니까요. 이것은 너무 과한 벌칙 아닌가요?

기획예산부처장: 1page를 보시면요. 작년에는 산학협력영역에만 제한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연구 (이상노) 및 산학협력까지 해가지고 연구영역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학생지도는 받을 수 있고 연구영역이라고 하면 여기서 일반학술트랙 또는 연구선택사업 연구영역에 대해서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위 원 : 예를 들면 의무 미이행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연구결과물을 안냈다는 의미죠.  
(윤용상) 지원된 연구비를 반납안한 상태인 경우에 계획서를 제출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반납을 하면은 계획서를 낼 수 있는 거죠.

위원장 :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제한을 한 것은 아니지요?  
(양규혁)

위 원 : 그러니까 이게 연구 분야에만 그런 건지 그 별칙이 연구 분야를 넘어서 교육이 (이인재) 나 학생지도에도 미치는 것인지 그 외의 자기주도라던가 다른 연구 분야에 이 별칙이 영향을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교연비에서 교육하고 학생지도는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연구영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상노) 다. 그러니까 자기주도비도 연구선택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위원장 : 근데 이 기준은 개정규정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만들 때 예를 들어 2 (양규혁) 월 28일까지 이행을 못했으면, 한 세 달이나 한 학기 시간을 주고 이행하고 하고 그 때까지 이행을 못하였을 때에는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사정이 있는 건데 가정에 불이 났다던가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페널티가 상당히 큰 거 같아 보이는데요. 대개 어떤 규정을 만들 때 이런식으로 만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위 원 : 그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되어 있는데 2월 28일까지가 기 (윤용상) 한이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게제예정만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료 후 6개월까지 게제된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니까 28일이 끝난다고 해서 그때 까지 성과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내시지만 그게 좀 늦 어지면은 그 날까지 게제예정되겠다라는 것만 내시면 됩니다.

위원장 : 연구 환경이 좀 좋은 분야에서는 그게 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재대로 연구를 (양규혁) 해서 제대로 된 학술지에서 제대로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년 기간을 정해놓고 논문을 쓰는데 2월 28일까지 게제예정 이다라는 것은 다 심사 끝나고 나오는 것인데 우리 지역 학술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일이지만, 어떤 분들은 꼭 그런건 아니잖아요. 좀 좋은 학술지에 게제하려고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일이 꼬이면 1년을 그냥 버리게 되는 거든요. 그런것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지, 막 요즘 논문 제출이 아무리 쉬워졌다고 하지만은 시간을 딱 못을 박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떤 분야별로 상당히 무 리가 있는 그런 조치 같습니다.

위 원 : 지금 이대로는 성실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 (이동현) 면 반드시 페이퍼가 나온다는 것을 반영하는 건데 적어도 교수가 예를 들어 페이퍼를 냈는데 승인이 안날수도 있는 건고 연구라는 것이 100퍼센트 성공해서 논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연구재단에서도 성 실실패를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100퍼센트 나온 것을 가정하고 하는 것은 너무 학문생태계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원 : 저도 방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연구결과에 주안점을 둘 것 (이인재) 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결과를 돌출하기 위해서 어떤 학술적인 노력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구 주제에 관한 학술발표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그 연구 주제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논문을 쓰지 못했더라도 결과를 늦게 또는 못썼다 하더라도 실태를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과물만 갖고서 이 분야를 끝 맺음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주사 : 잠깐 논란이 있는 부분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교연비 자체에서 전  
(김 용) 년도 실적을 제출하지 못해서 그 다음연도에 못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연구지원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요. 교  
육부에서 공문이 와서 연구선택영역 즉 본인들이 연구를 하겠다고 제출한 것인  
데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 교연비에 영향을 미치나 미치지 못하나 인대요. 작년까  
지는 영향을 안 미쳤어요. 선택영역 연구기반조성비를 인문사회계열에서 선지급  
을 받고 연구수행을 하였는데 1년 2년 하기로 했는데도 그렇게 제출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교연비 연구영역도 수행할 수 없다는 내  
용이고요. 교연비 자체로는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위 원 : 언급해주신 부분에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대요.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  
(윤용상) 습니다. 일반트랙 같은 경우에 연구영역을 보면은 논문뿐만 아니고 다양한 활  
동 등에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야한다는 그러  
한 제약은 아닙니다. 다만 학술트랙의 경우에는 논문이 주이기 때문에 유예기  
간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성실실패에 대한 항목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 원 : 저도 이인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가는 것 같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하기에  
(홍철운) 논문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해에 2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문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분이 연구의 과정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  
약에 그러한 논문이 없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 나오는 논문을 위해서 올해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과정을 평가를 해주시고 그 평가에 대해서 유연하게 6  
개월의 시간을 ~~때 준다던가 나중에~~ 그런 것을 제출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  
을 좀 더 제도적으로 유연하게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 영어 강의 과목  
담당을 삭제하셨는대요. 영어 강의를 하면 아예 안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부처장 : 영어강의가 중복지급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영어강의에 대해  
(이상노) 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데 교연비에서 또 준다는 것은 중복지급이라는 지  
적이 있었습니다.

위 원 : 그러면 중복이라는게 학부에 영어강의를 하면은 영어강의료에 대한 것을 일  
(최백렬) 부 주죠? 근데 이것이 대학원 때문에 남아 있었거든요? 대학원은 안주기 때문  
에 교연비 지급방법에서 지급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학원도 영어강의료  
를 지급하나요? 최종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강의료 지급에 대해서 학사관리과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빼는 것이 맞고  
그쪽에서 결정이 안됐는데 빼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주사보 : 교연비 저희 심사에서 교무학사부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먼저 교연  
(정유진) 비 심사위원회에서 논의가 한번 되었고요. 그 논의 결과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빠지는게 낮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학사관리과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위 원 : 네 알겠습니다.

(최백렬)

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규혁)

위 원 : 이인재위원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김중기) 다고 하셨는데 제 느낌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서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교연비도 제가 와서 학술트랙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자료 작성이나 계획서 만들고 실적자료 내고 이런 젓이 번거로워서 학술트랙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자꾸 제도가 더 섬세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봉급표라든가 교수들의 봉급표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있어서 이 교연비를 빼게 되면 일반 공무원보다도 낮을 수 있다는게 제가 공무원 생활하다가 학교에 왔는데 전체연봉으로 따지니까 90만원이 적어지더라고요. 이런 현상도 제가 스스로 느껴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반대한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 원 : 교육부에서 국립대학의 총장님들께서 협의가 돼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교  
(이인재) 육부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대의와 명분도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대서는 이것을 봉급이라고 쳐서 세금을 내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봉급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교수들이거든요. 교수들이 아까 봉급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것뿐만 아니라 연금손실도 생각하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 자료를 국교원에서 ~~연구자를~~ 했었고요. ~~연구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단~~.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교육부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대화상대로 쳐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교수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논의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연구·학생지도가 교수가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수의 봉급에 2천만 원이면 30%도 안 되거든요. 그것으로 증빙자료를 내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교수에 대한 비하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수되어 낭비되는 인력, 시간의 낭비 그 다음에 제출하면서 생기는 서류 이것은 금전적인 낭비 등을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국고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난처한 개요. 일반트랙에서 학생들과 평  
(김중기) 생지도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자기 학습활동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교수한테 다가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요것을 실적을 내기위해서 교수인 제가 학생들에게 아쉬워지는 거예요. 상담오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일부러 밥을 사주면서 상담을 해야됩니다. 학생들의 자유성이나 스스로 찾아서 먼가 이번 비대면 강의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학생들한테 교수가 안내를 안했다고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 제가 알기로 대학회계로 전환된 직후에 그 당시 기획부처장이 이 안을 상의하기 (양규혁) 위해서 교육부를 한 20번 넘게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이 굉장히 교육부하고 조정하느라고 고민에 고민을 한 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많이 처음보다는 순화된 느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립대학 교수들의 공무원 신분 이러한 것과 얹혀 있는 것 같아서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 대학노조 사무국장 이문선입니다. 올해 안건이나 지금 기준이나 이런데에서 대학회 (이문선) 계적이 늘어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 쪽에서 묻고 싶은게 아까 처음에 제안 설명하실 때 대학회계직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계약에 근거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계약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계약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저희가 항상 상담이나 이의를 제기하면 총괄부서가 없어요. 돈 문제니까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해라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하면 계약서를 쓴 곳은 총무과다 총무과에 가면 총괄하는데 기획과다. 이렇게 떠밀다 보니까 저희가 분명히 총괄자체는 지금 여기에도 쓰여 있지만 교연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확정하는 것은 기획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기획과에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계약서에 의거라는 말을 하는데 그 계약서가 도대체 어떤 계약서를 말하는 건지 저희가 총무과 체결하는 임단협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기획과는 줄 수 있다는 얘기인건지 저희는 소통창구가 하나가 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정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것인지 그걸 미루지 않고 해야 우리도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고 교육부까지 가야될 때에는 저희도 교육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창구를 단일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셨던 계약서라는게 도대체 어떤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행정주사 : 지금 현재 대학회계직은 16년 5월달 이후에 대학근로협약을 체결해서 직원 (김용) 신규채용이 된 분들한테는 교연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임금협상할 때 청소 경비용역 분들이 저희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당시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들었고요. 만약에 교연비까지 고민을 해서 총무과에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면 명문화시켜서 교연비도 같이 논의가 되었어야 했는데 저희한테 어떤 협의절차도 없이 바로 총무과에서 정규직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게 교연비를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12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주요 사업비가 20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소모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주는 상태이거든요.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점차 재정여건이나 상황을 보고 고민을 해야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전에 임용되신 대학회계직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총무과하고 임단협을 할 때 문의사항을 받고요. 올해 임단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원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학회계직에서 그때 전환되신 분들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최백렬) 말고 최근에 대학회계직 뽑으실 꺼 아니에요? 일반 업무 그 분들도 못 받습니까?  
위 원 : 청소용역 이야기만 하신 것 같은데 16년도 7월 달에 넘어왔을 때는 환경미화원들이  
(이문선) 아니고요. 미리 하신 분들이 전환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후에 추가로 전  
환이 되어야 하실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이 전환되면 다시 검토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선 이것은 임금이 아니  
기 때문에 임금협상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저희가 남은 계약이라고  
는 단체협상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체결이 된다고 하면 기획과에서는 대상에 넣어주  
실수 있다는 이야기 인건지 그럼 저희가 협상을 총무과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거거든요. 대체 어느 부서랑 제가 1차적으로 협의  
를 마쳐서 가야되는 건가 총무과에서는 기획과, 기획과에서는 재무과 이렇게 미루기  
만 하니까 어느 부서에서 나오는 서류가 있으면 대상으로 넣어줄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받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행정주사 : 임단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임금협상은 아니고요. 올해 단체협상이 있지

(김 용) 않습니까? 단체협상에서 논의하시죠.

위 원 :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대학회계직도 일부 받으시는 분도 계시다

(홍철운) 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교연비에서 받는 학물이 어떤 학물인가요?

행정주사 : 학생지도항목입니다.

(김 용)

위 원 : 회계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학생지도를 하

(홍철운) 고 있어요? 『이거』 『여기』 『여기서』

행정주사 : 직원하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중에서 연구하고 학생지도를 할 수

(김 용)

는데 학생 행사랄지, 총학에서 하는 축제랄지, 이런것도 시험기간때 지도하는 임상지도, 상담도 가능합니다.

기획예산부처장: 17페이지 보면 학생 멘토링, 학생지도 관련 행사를 충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노) 다.

위 원 : 조교들은 여전상 학생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충족할 수 있다고 볼 수

(홍철운) 있지만 일방 대화회계직 같은 경우 충돌이 가능한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부처장:** 하긴 하는데요. 직원선생님들도 이것을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이상노)

그걸 한 번 봄을 했던 그때 이는 정신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시민권에 구묘를 했거든요. 근데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교연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 원 :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결을 시키면 만약에 이제 못받고 있음에도 불구

(홍철우)

이도 육정기초 11-115 같은 강의를 듣고 계시면 강의가 듣고자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안 하시면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누구는 받나, 안받나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항목에 명확하게 일들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받는게 맞죠.

기획예산부처장 : 항목에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교연비 자체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

(이상노) 학노조 일부 직원에게는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위 원 : 받을 수 없게 했지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

(홍철운) 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안 하신다면 사실은 받지

않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제도나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잘

정비가 된 상황이어야 아마 지금 이러한 일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교연비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은 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이상노)

위 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홍철운) 데 이러한 것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평행선을 그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나 지침이나 그 다음에 이러한 교연비에 대한 출 수 있는

항목 또는 실제로 현장에서 대학회계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면 당연히 받는

게 맞고 안하시면 안 받는게 맞고 그런게 제도나 지침으로 명시되어야 이게

마무리될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

까 학술트랙 연구 기준 의무 미이행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

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정리해서 안건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

기에서 마무리 하는 건가요?

위원장 : 지금 이 자리에서 안을 내서 수정안을 가결시키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수정

(양규혁) 안을 바로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처장님 이것을 손을

봐 가지고 기간 내에 한다든지 또 다음회의가 있을 테니까요.

위 원 : 지금 수정제안을 끄리기가 ~~지금~~ 쉽지가 않고요. 학술트랙일 경우에는 유예기

(윤영상) 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너분들이 마감일까지 제출 못하셨기

때문에 게재증명만 하시고 가는 것으로 해서 전원 다 받으시게 했고, 근데

다만 아까 성실실패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성실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제안하

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거기서 제출된 자료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

(양규혁) 은데요. 오늘은 일단 통과하고 기획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서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주사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최종 수정은 우리 대학 내에서 재정위원회에서 하

(김 용) 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매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승인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정대로라면 오늘

재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아서 이 달 말 정도에 계

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늦어지는 거고 승인 절차도 어떻게 될지

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 근데 기본적으로 원리가 하자가 있으면 깍는다던가 패널티가 조금 있는거지

(양규혁) 몽땅 다 없애버리고 이런 것은 어느 법에도 이런 것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복구 할 수 있는 실제로 늦어지면 약간 다음에는 몇 % 깍는

다던가 납득이 가는데 사실 제가 텍스 전공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계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줘야되는거죠

위원장 :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20%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전혀 내지를 못  
(양규혁) 한다라는 것은 조금 기본적인 균형설정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출을 못하고 논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소  
(윤영상) 급해서 다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0%만 받는 것이 아니고  
100%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문을 못 내겠다. 하면 반납하면 다시  
계획서를 내면됩니다.

위원장 : 현재 문제가 폐널티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찬성  
(이인재) 반대를 결정하는데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주사 :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교연비  
(김용) 를 연구 계획서대로 수행을 못했을 경우에 제한조치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 달라진 점은 연구선택영역 즉 연구기반조성비 본인이 연구하겠다고 저희  
연구지원부에 제출을 해가지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행하지  
못한 결과가 교연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올해 바뀐 점입니다. 작년 예를들면은 한 12명 정도 있었고요. 그러면 연구기반조성비를 선  
급금 300만원 또는 200만원을 받아가지고 못하겠다고 다시 반납을 하면 당  
연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 지금 다른 연구하고 교연비가 묶여 있다는 얘기죠?

(양규혁)

위원장 : 교연비에 연구영역을 보면은 일반트랙에서 연구 및 산학협력활동 영역이 있  
(윤영상) 고요. 선택영역이라고 해서 논문제작경비를 받잖아요? 그것도 교연비내에 들  
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게 자기주도우선개발비가 있잖  
아요? 그것도 연구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 근데 사실 교수들이 인식하는 교연비하고 그러한 것들하고는 전혀 별개인데  
(양규혁) 그게 같은 항목에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서 폐널티가 옆으로  
이전해 오는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일반영역에서 연구영역으로 하는 거하고 학술트랙에서  
(최백렬) 결과보고를 못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연구영역에서 계획  
서를 냈는데 그것을 못했다. 그런 경우에 그 다음 연구영역에서의 제출 못한  
다. 그 의미인가요? 여기서 보면 기준 의무 미이행인 경우에 다음 년도 연구  
전 영역 참여제한 어느 한곳에 기준을 못 맞추면 다음연도에 전 영역에 참  
여를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 4페이지에도 교내 연구 및 산학협력활동 전 항목 의무 미이행시 연구 및 산  
(이동현) 학협력영역 비용 미지급 이것이 학술트랙인지 일반트랙인지 아니면 모든 것  
을 총칭하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위원장 : 교수입장에서 보면은 일반트랙, 학술트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  
(윤영상) 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반트랙인지 학술트랙인지 둘 중 하나에 걸칠 순 없  
어요. 그 다음에 연구선택영역은 자기 연구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성으로  
그전에 받던 것을 여기서 받는 것입니다.

위원 : 예를 들어서 학술트랙이다. 2년에 한편씩 내는 것을 안냈다. 하면은 낼 때  
(윤영상) 까지는 그 다음연도 계획서를 못내는 것입니다. 반납을 하든가 논문을 6월  
달에 내면 나머지 1년 반 동안에 또 성과를 내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 그러면 아까 12명 정도 못 받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같은데 그 분들 캐  
(양규혁) 이스를 보면은 왜 못 받았는가를 설명을 해주실래요?

행정주사 : 지금 현재로도 우리 대학에 연구학술집행 지침이 연구지원부에서 매년 발행  
(김용) 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영역이라고 하면 논문인센티브, 연구기  
관조성비, 학술대회개최경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  
는 것을 어느 한 두 번을 못했다는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교연비처럼 급여보조성 경비가 아니고 선택영역같은 경우는 연구기반조  
성비를 충족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신청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로도  
연구선택영역 안에는 하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받는거죠. 그런데 그 인센티브로 사전에 연구비를 받아서 지급  
받기를 원하는데 못했을 경우에 학술대회개최경비랄지 연구인센티브랄지 이  
런 것들은 사실 연구기간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제출을 하면 받는 거니까 해  
당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해당이 없고요. 연구기반조성비정도가 내가 3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분들이 연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연구기반  
조성비를 못했을 경우에 교연비에 여향을 미친다는 점만 이번에 바뀐 점입  
니다.

위원 : 제가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요. 학술트랙을  
(김중기)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들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자기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학술트랙을 선택해서 가기도 하고요. 일반트랙이  
계획서를 너무 제출하고 거기에 실적도 제출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학술트랙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더 소수자  
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율을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이 너무나 벌칙이 과다하다 해서 또 완화를 시켜줬는데 완화 시켜준 규정에  
의해서 또 하다보니까 또 거기서도 탈락자가 생길 수 가 있는데 그 분도 너  
무 가혹하니까 또 완화한다고 해야 되는 꼬리를 물고 제도는 넓혀 가야되는  
그런 현상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트랙에서도 충분히 번거로운거  
빼고는 교연비를 받을 수 있고요. 오히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  
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는 대학회계직들이 똑같이 학교구성원으로서 같  
은 기능들을 한다고 하면 사실 기존의 학생지도비를 받고 있는 직원이나 이  
런 분들도 실제로도 기능을 하지 않는데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받는 사  
람들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처럼 다 따져서 하다보면은 저는 어렵다고 보  
고요. 회계직들에 대한 차별적인 문제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미  
에서 예산이 허락해 준다면 회계직도 저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안건을 상정해서 이러한 안건들이 올려져서 여기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직원 부분 교연비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원래 본질기능을 수행하

(박성수) 는데 있어서 주는게 아니고 추가로 학생지도활동을 했을 때 받는 겁니다. 왜  
냐면 행정이 주 업무라 학생지도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원래 미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철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학생과 같은 경우는 학생 관련된 볼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는 카운트가 제외가 됩니다. 원래 사무분장에 속하는 자기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직원 지급 대상 확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안하는 가는 쟁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원 지급 대상 확장 문제는 지  
금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심려 있는 논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기에 말씀을 드렸  
(김중기) 습니다.

위 원 : 물론 최종결정권은 재정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박성수) 단기간에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드린대로 여러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  
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지난 위원회에서도 언뜻 그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논의가 실제로도 이루어  
(김중기) 지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거나 했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또 넘어  
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 우리가 대학회계직의 전체적인 보수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  
(양규혁) 에 충분히 ~~받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해서 보충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본질  
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노하우~~ 것들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안이 올라와야 우리가 결정을 하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덥썩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좀 무  
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원 : 물론 결정의 과정들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최소한 이것은 우  
(김중기) 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회계직에 대해서 학생지도비를 줄거냐 말거냐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나 말 것이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위원장 :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명목이 전북대학교는 그러면  
(양규혁) 대학회계직하고 교수하고 학생들을 같이 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목  
을 바꿔서 줘야 되는 것이 맞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주자 이것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 원 : 시간이 많이 지나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최백렬) 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문구 그대로 보면 또 오해를 살 것 같은데 2020년  
계획에 풀 텍스트로 써 놓은게 있습니까? 이상노부처장님 혹시 이 내용을 이  
글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기획예산부처장: 연구지원과에서 제출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상노)

위 원 :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지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최백렬) 대로는 아마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저번에 교연비 심사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저희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  
(이상노) 각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 원 : 연구기반조성비 문제인데요. 이게 특히 인문·사회같은 경우에 대학원생 지원하는 대  
(윤영상) 신에 논문 한편을 써서 300만원을 받겠다. 이렇게 계획을 써서 미리 돈을 받는 받는  
거죠. 근데 논문을 안내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이 12분인가 됐다는 겁니다. 안내  
시는 분들이 내실 때까지 연구 영역은 하지마라 이런 사항입니다.

위 원 : 교연비에서의 항목에서 자기가 미이행 했을 때에 차기 교연비에 대해서 제  
(최백렬) 한을 하는게 아니라 연구기반조성비를 받아서 그 결과물을 안냈을 때 교연  
비에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인가요?

위 원 : 연구기반조성비가 연구선택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윤영상) 것이 연구기반조성비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받는 대신에 논문내  
는거 있잖아요?

위 원 : 연구기반조성비로 돈을 받아서 결과물을 내야 다음연도에 교연비를 받을 수  
(최백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연구기반조성비를 받아서 결과물을 안내니까 다  
음연도 교연비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위 원 : 그렇죠

(윤영상)

위 원 : 계속이요?

(이동현)

위 원 : 아니요. 돈을 반납하면은 당장 내년도 것을 할 수 있고 늦게라도 실적물을  
(윤영상) 내면 그 다음부터는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교연비에서 연구기반조성비를 차감하고 주면 되지 않나요? 교연비가  
(양규혁) 훨씬 큰대요.

위 원 : 좌측에 보면 교내 연구학술진흥 사업 의무 미이행이내요. 그게 우측에도 같  
(최백렬) 이 적용되는 거죠? 교내 연구학술진흥 사업 의무 미이행은 매년 2월 28일까  
지 그 의무를 미이행했을때는 차년도 교연비 연구 전 영역에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위 원 : 그렇죠.

(윤영상)

위원장 : 이번에 이것을 뚫는 연구기반조성비하고 교연비하고 뚫어야 될 특별한 이유  
(양규혁) 가 생긴 건가요?

행정주사 : 전체 교연비안에 연구영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구영역에 되어 있는 것들  
(김 용) 은 어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전체다 지급을 하지 말라는 교육부 지침입  
니다.

위원장 : 교수들은 교연비를 전에부터 받는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을 안했다고  
(양규혁)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인식차이가 큰 것 같고요. 연구기반  
조성비는 내가 논문을 쓸 계획이 있으면 받는 거고 교연비는 옛날부터 받아  
오던 거니까 당연히 받는 보수고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같은 규정안에 뚫여있다 해 가지고 패널티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요?

위원 : 교육부 지침은 법이 아니죠? 이렇게 재정위원회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이 (이인재) 렇게 한정 해 놓고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 이내요. 말이 안 되는데요? 지침대로 하라면 이 지침이니까 따라라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나요?

행정주사 : 지침이니까 따르라는 말씀은 누구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논의를 해서 안을 (김용) 가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 결정해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안을 가지고 교육부와 이야기를 해야 하고 부가 되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 이 안이 여기에서 지체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겠죠?

(양규혁)

위원 : 지급방법을 개정하지 않고 여기서 구 규정으로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꼭 (최백렬) 개정을 해야 됩니까?

행정주사 : 논란이 되는 그 부분만 기존 안으로 동일하게 하고 나중에 저희가 교육부하고 (김용)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꼭 넣어야 한다고 하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 이인재 교수님이 안을 해줬으니까 다시 한 번 제안을 해주시겠어요?

(양규혁)

위원 :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이 안을 가지고서 가부를 결정하기 (이인재) 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안을 일단 통과되었던 안이니까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교육부 추후 협의에 따라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이 안건에 더 ~~의사봉~~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양규혁)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이 동의하신다면 거수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2019년 기준으로 가결하되 교육부 협의에 따라 추가로 논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2020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전원 찬성)

위원장 : 전원이 찬성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원 (양규혁) 찬성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순서는 회의록 간(間)서명 대표자 3인을 선출하는 순서입니다. 본 회의 (양규혁) 를 마치기 전에 기타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제4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은 김중기, 이문선, 이원석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위원들 : 김중기, 이문선, 이원석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김중기 위원님, 이문선 위원님, 이원석 위원님 이렇게 3분이 간(間)서

(양규혁) 명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 원 : 기타제안으로 적어도 회의 자료는 미리 배포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전에는 관  
(박성수) 련 부서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타 대학은 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양규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 사 :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  
(김강욱) 습니다.

작성일 : 2020. 4. 15.(수)

위 원 장 : 양 규 혁 *양규혁*  
간 사 : 김 강 욱 *김강욱*  
기 록 자 : 김 선 응 *김선웅*

00'1

4/23

4/15